

제 22차 대의원 정기총회회의 초록

일	시	1973년 4월 13일(금) 오전 10시
장	소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대 강당
출석대의원		131명(재적대의원 140명)
사 회		선우양국 총무이사
개 회 선 언		선우양국 총무이사
치과의사윤리 강 령 낭 독		협회장(김 기혁 부회장 대독)
개 회 사		변 종수 의장
회 장 인 사		김 귀선 회장
축 사		보건사회부장관(이 문기 의정국장 대독)
감 사 장 수 여		보건사회부장관(이 문기 의정국장) 변 종수 의장(세계보건의날 감사장)
명 예 회원 증 수		김 귀선 회장 수여, (Col. Millard, E. De Yong, Lt-Col. Silas, N. Crase, Maj. Stephen, Boglarski)
협 대 수 상 회 여		김 귀선 회장 공로상 박 재훈·학술상 이 영옥
의 감 사 패 수 여 장		변 종수 의장, 건립위원 문홍조 외 10명, 전(前)임원 최원덕, 이 주봉
협 회 회 장 표 창 장 수 여 회		김 귀선 회장 수여, 공로상 박 찬석 외 12명, 학술상 박 태원 외 26명 10시 35분 휴 회

회 의

- (1) 전년도 수입사항 처리 보고 수리
- (2) 각 위원회 사업 보고 승인
- (3) 결산보고 승인 결산액 세입 5,407,661원 세출 5,033,035원 잔액 376,624원
- (4) 감사 보고
- (5) 정관 개정안 심의

제 5 조 본 협회는 서울특별시, 부산직할시, 각 도, 군진 및 공직치과의사회 (이하 치과의사회라 칭한다)를 두고 각기 사무소는 각 시·도청 소재지에 둠을 원칙으로 한다(가결).

제 6 조 제 2 항(자구수정 가결)

제 5 항(자구수정 가결)

제10조 (자구수정 가결)

제12조 제 3 항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자는 그의 권리가 정지된다(신설 가결)

제15조 (철회)

제20조 (철회)

제21조 (철회)

제48조 2 치무위원회로(자구수정 가결)

제49조 2항 자구수정 제4항 (개정 가결)

제10장 (자구수정 가결)

제56조 각 치과의사회는 매월 다음 사항을 본 협회로 보고 하여야 한다.

1. 사업실적보고
2. 회원의 이동사항 및 기타사항(신설 가결)

제11조 분과학회(자구수정 가결)

제60조 (자구수정 가결)

제61조 각 학회는 본협회 정관범위내에서 각기 회칙을 제정하고 본협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개정 가결)

제62조 각 학회는 매분기별로 학회 활동사항을 학술위원장을 경유 협회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신설 가결)

제70조 제 2항 관공서 학교 및 각군 현역에 근무하는자는 년회비의 2분지 1을 감액(개정 가결)
부 칙 본 정관은 인가된 날로부터 시행한다(개정 가결)

(6) 73년도 사업 계획안 심의 승인

(7) 1973년도 예산안 심의 승인
예산액 12,354,326원 (회비는 전년도와 동일)

(8) 의료보험 연구위원회 사업 및 특별회계안 (승인)
(년 회비 정회원 1,000원, 특별회원 500원)

(9) 회관건립위원회 73년도 사업 계획 및 예산안(승인)

(10) 치과월보 특별회계안 승인

(11) 일반의안

1. 치과기재 수급 원할책 강구 (경북) 10번과 같이 토의하기로 함
2. 공직 치과의사회 회원중 서울특별시 비거주자에게 해당 거주지 치과의사회에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모색 (경북)
정관상 위배 되므로 폐기하기로 의결 (부결)
3. 지방대학(치과대학) 설립 추진 (경북) (철회)
4. 특수재료(주·접착제)를 협회에서 구입 관리하여 통제 할 것 (경남)
10번 문제와 유사하므로 묶어서 토의하기로 함.
5. 치과전문외제도 조기실시 반대 (서울, 부산)
반대결론...국민소득이 1,000불 이상이되고 의료보험제도가 실시되어 회원의 대다수가 요망할 때에 실시하기로 무기한 연기 할것.
전문외제도 무기한 연기하기로 (가결)
6. 치과기공사 수련기관 지정조건 개선 연구의견 (부산)
본 안건은 의료법의 규제되었으므로 다루지 않기로 (부결)
7. 간호원 수급 계획에 관한 건 (서울) 현재여건으로는 불가능하므로 (부결)
8. 치과의사 기공소 운영 장려에 관한건(서울) 의료법상 기공소 설치가 조항이 없으므로(부결)
9. 정기신고 절차 개선에 관한 건 (서울) (철회)
10. 치과재료 (품귀현상 타개 및 가격인상 억제에 관한 건)(서울) 집행부에 연구과제로 일임
폐 회 18시 30분